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7호

2020. 2. 10.

전 명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맑은물과)				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/	시 장	제안연월일	2020.	2.	3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의	위 원 회	회부연월일	2020.	2.	3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시 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, 원인자 부담금 단가 재산정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9호~제14호)
- 조문 손괴자 등의 의무,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신설(안 제3조의2, 제7조의2)
-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의 신설(안 제4조제1항제1호 가~사목)
- 별표 1, 2, 3 삭제 후 신설

□ 검토의견

○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수도법 제71조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